

『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』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윤종호 의원외 19명

2. 제안이유

- 구미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부실공사신고 센터를 설치하여 건전한 공사관행 정착은 물론 건설공사관계자의 경각심 고취로 부실공사를 원천 봉쇄하고,
- 부실공사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구미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제재를 가하므로 부실공사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시책 마련 (안 제4조)
- 건설공사의 부실신고에 따른 부실측정 (안 제5조)
-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 점검 (안 제6조)
- 건설공사에 대한 품질시험 및 검사 실시 (안 제7조)
- 부실공사신고 전담부서 설치 및 부실공사의 신고 및 접수(안 제8~제9조)
- 부실공사 신고 처리, 심의, 조치사항 등(안 제10조~제14조)

4. 참고사항

- 「건설사업기본법」 제2조제4조
- 「건설기술관리법」 제2조제10호, 제6조의4제1항, 제20조의4제1항, 제21조의4, 제24조, 제26조의2, 제33조제1항, 제35조
- 「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11
- 「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3, 4, 10, 별표10제5조
- 「구미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」 제2조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구미시에서 발주하는 총 공사비 5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행의 적정을 기하고,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부실공사 신고 전담부서에서는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발주부서로 통보하고, 발주부서에서는 소속 공무원과 해당분야 전문가를 참여시켜,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고, 부실 여부를 심의하거나,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부실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며,
- 부실공사로 판정된 경우, 발주부서는 해당 설계사, 시공사와 감리 업체에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적 조치를 하여야 함.

○ 검토결과

- 건설공사 관계자의 경각심을 고취시켜, 부실공사를 원천 봉쇄하고 성실, 견실, 책임시공 분위기를 조성하여 품질향상 등 기술 선진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되며, 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